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흠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85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성흠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성준, 김원태,
박승진, 박철성, 송도호,
왕정순, 유정희, 임규호,
최민규, 홍국표 의원(11
명)

1. 제안이유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보도통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과 교통질서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시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음.
- 또한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포상·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아울러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상 운영·관리 의무는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이에 시민의 안전운행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보도통행 금지 등 안전운행기준 준수 의무를 시민의 책무로 명시함(안 제5조제4항 신설)
- 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하여 표창, 홍보, 행정적 지원 및 예산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 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운행 기록 관리 및 운영 실태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의 행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도통행을 금지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운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하여 표창, 홍보,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운행 기록 관리 및 운영 실태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시민의 책무) ① ~ ③ (생략) <u><신 설></u></p>	<p>제5조(시민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도통행을 금지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운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u></p>
<p>제12조(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①·② (생략) <u><신 설></u></p>	<p>제12조(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하여 표창, 홍보,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제1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 ① ~ ③ (생략) <u><신 설></u></p>	<p>제1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운행 기록관리 및 운영 실태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5조(시민의 책무)	×	[재정소요 요인 없음] 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운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제12조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	[기술적 추계 곤란]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서울시 교통운영과) 문의결과 현재 이와 관련한 예산 편성, 지원 시기 및 범위·방법, 세부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객관적 추계가 곤란
2	제1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	×	[재정소요 요인 없음]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안전운행 기록 관리 및 운영 실태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기존의 업무 체계 ¹⁾ 내에서 수행가능한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운행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교통안전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1) 2025년 하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교육부 영유아안전정보과-3593, 2025. 8. 27.)
2025년 하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결과 제출(서울시 영유아담당관-20926, 2025. 11. 173.)

- 안 제12조제3항의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서울시 교통운영과) 문의결과 현재 이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지원시기 및 범위·방법, 세부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현재 객관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권 봉 수

☎ 02-2180-7952

e-mail : shibedoge0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